

거창군농업인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3~24
----------	---------

제출연월	2003. 5.
제출자	거창군수

□ 개정사유

-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거창군농업인 소득지원기금”을 “거창군농업발전기금”으로 전환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개정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당초의 제명 “거창군농업인소득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거창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로 개정함(안 제명)
- 기금의 운용관리는 거창군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로 관리하되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융자금 지원사업은 농업인소득증대,지역명품육성,축산환경,농.축산업운영자금, 농업재해 피해복구사업등이며, 보조지원대상사업은 농작물재해보험 자부담보험료 일부지원, 이차보전지원, 기타 심의회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규정함(안 제8조)
- 융자금지원조건은 시설자금 5천만원 이하 3년거치 5년균분상환, 생산및운영자금 1천만원 이하 1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규정함(안 제11조)
- 종전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규정함(안 부칙 제2조)

□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3조

거창군농업인소득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거창군농업인소득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내 농업인을 지원하여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창군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 가. 후계농업인, 후계임업인
 - 나. 전업농, 독농가
 - 다. 농·축·임업생산자 단체
2. 지역명품
 - 가. 군내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특산물
3. 재해농가
 - 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농가
 - 나. 기타 심의회에서 재해농가에 해당된다고 결정된 농가

제3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거창군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제4조 (특별회계의 설치 및 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거창군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②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예치
2. 국채, 공채, 유가증권 매입
3. 기타 기금 증식사업

제5조 (심의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심의를 위하여 거창군농업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용자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사항
3. 기타 기금의 보조지원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농업관계공무원 3명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제6조 (기금운용계획)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2. 당해연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대상자 선정
3. 기타 기금운용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용자재원및대출) ① 농업인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을 용자취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의 지원자금으로 용자금을 대출한다.

② 연간 대출 용자금액과 대출절차는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용자.보조지원대상사업 및 용도) ① 제7조에 의한 용자대상 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지원 사업

2. 지역명품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 축산환경개선 시설지원사업
 4. 농·축산업 운영자금
 5. 농업재해 피해 복구사업
 6. 기타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된 사업
- ② 용자지원사업 용도는 농업경영시설자금과 생산에 따른 운영자금에 지원한다.
- ③ 기금에서 보조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자부담 보험료 일부지원
 2. 제1항에 의한 용자대상사업에 지원된 용자금의 이차보전
 3. 기타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된 사업

제9조 (용자및보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용자대상자 선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중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② 기금의 보조지원대상자 선정은 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0조 (용자 및 보조지원대상자 통보) 군수는 제9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자 및 보조지원조건) ① 용자한도액은 시설자금 5천만원 이하, 생산에 따른 운영 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지원한다.

② 대출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대출금리는 규칙으로 정한다.

1. 시설자금은 3년거치 5년균분상환
2. 생산에 따른 운영자금은 1년거치 3년균분상환

③ 농작물재해 보험 가입농가 본인부담 보험료 보조지원 규모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지원사업등은 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2조 (이차보전 방법) ① 군수는 용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② 이차보전 재원은 기금 이식금으로 보전하고 부족분은 기금에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이차보전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용자금 상환기일전 회수) ① 군수는 용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용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2. 용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용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군 관할구역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5. 기타 금융기관의 요청 등 용자금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용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 받은 가구와 금융기관에 상환통지를 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사후관리) 군수와 금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용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 및 용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감독과 명령) 군수는 기금적립 및 용자금 취급협약을 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용자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회계관리)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3조의 재원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재원
2. 제12조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재원
3. 기타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③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관리관은 산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정담당주사로 한다.

④ 기금관리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 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거창군농업인소득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